

# 운담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【명칭】** 이 규정은 '운담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'이라 한다.

**제2조【목적】** 본 규정은 운담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,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3조【적용근거】**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(학습자), 초·중등교육법 제8조(학교 규칙), 초·중등교육법 제17조(학생자치활동), 제18조(학생의 징계), 제18조의 4(학생의 인권 보장)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), 제30조(학생자치활동 보장),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, 헌법, UN아동권리협약,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등에 근거한다.

### 제4조(학생의 권리보장 원칙)

-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,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,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.
- ③ 운담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'학생인권 조례' 제2장 학생의 인권에 명시된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본 규정 2장 및 조례를 참조한다.

**제5조【책무】** 운담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.

- ① 학교장 및 교직원,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·보호·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,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학부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  1. 학생(자녀)의 외출 및 귀가시간, 교우관계,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
  2.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(음란물, 폭력물, 게임) 중독 증상이 있을 시
- ④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,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,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

야 한다.

⑤ 학교장 및 교직원, 학부모는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.

### 제6조【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】

-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·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7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예·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학생생활

### 제7조 【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】

- ① 같은 학년 및 위·아래 학년 사이에,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 사이에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한다.
- ② 같은 학년 또는 아래 학년 학생에게는 이름으로 부르고, 위 학년 학생에게는 형, 누나, 오빠, 언니 등으로 부르거나 이름을 덧붙여 부를 수 있다.
- ③ 상대방이 좋아하는 별명으로 부를 수 있으며, 싫어하는 별명은 부르지 않는다.
- ④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.
- ⑤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양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는다.

### 제8조 【성평등】

- ① 모든 학생은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.
- ② 서로 사귀는 때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.
- ③ 학교 내에서 서로 사귀는 학생끼리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.
- ④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,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.

### 제9조 【차별받지 않을 권리】

- ① 학생은 성별, 종교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언어, 장애, 용모 등 신체조건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성적 지향, 병력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은 제1항에 적힌 내용과 관련하여 차별적 언행,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
- ③ 학교는 제1항에 적힌 내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 【폭력예방】

- ①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에서는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③ 학생은 학교 안과 밖 또는 사이버 공간 등에서 폭력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거나 발생했을 때, 가까이 있는 교사, 학부모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다른 사람의 생각, 몸,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실천한다.

### 제11조 【학생 안전】

- ① 학생은 학교의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

다.

- ②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,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③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장난 또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④ 복도와 계단은 되도록 걸어서 이동한다.
- ⑤ 사람이 많은 곳은 차를 지키며 질서 있게 행동한다.

### 제12조 【학습권 보호 및 수업 태도】

- ① 모든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.
- ② 자신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및 다른 학년의 학습권도 소중히 생각한다.
- ③ 수업 시간이 되면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④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.
- ⑤ 어려운 것이 있어도 도전해보는 태도를 갖는다.

### 제13조 【휴식 시간】

- ① 학생은 학교의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쉬는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.
- ③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(컴퓨터실, 체육실, 도서관 등)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해당 특별실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.

### 제14조 【개성을 실현할 권리】

- ① 학생은 복장, 머리카락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학교는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.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. 단,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5조 【소지 금지 물품】**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단,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.

- ① 흉기 등 사람의 신체·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
- ② 성냥,ライター,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
- ③ 도박에 관련된 물건
- ④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
- ⑤ 담배, 주류, 부탄가스, 본드, 마약, 대마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

### 제16조 【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】

- ① 학생생활지도(흡연 등)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·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.
-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,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·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소지품 검사는 남학생은 남교사, 여학생은 여교사가 실시하고,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단, 학생이 흥기 등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,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.
-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,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·이유·절차·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.

**제17조 【물건의 수거】**

-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,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.
-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,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(보호자)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18조 【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수정】**

-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,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,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·처리·관리함에 있어서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**제19조 【말, 행동, 생각 등 표현의 자유】**

- ① 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, 행동,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이 자유롭게 말, 행동, 생각 등을 표현할 때 학교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③ 학교는 학생자치회 게시판 활동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.
- ④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하고,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- ⑤ 학생 게시판에 학교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의 글이 있을 때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약속 등에 따라 그 글을 쓴 사람이 스스로 없애도록 안내한 후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없애거나 치울 수 있다.

**제20조 【휴대전화 및 전자기기】**

-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.
- ② 학생은 방과 후에 교사,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실 또는 자치회실에서 학습 및 건전한 취미 활동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③ 통학버스 및 체험학습 버스 안에서 긴급한 연락을 제외하고,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로 게임, 유튜브 시청, 음악 듣기 등을 하지 않는다.
- ④ 학생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, 교사는 해당 학생의 기기를 수거·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.
-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목소리나 모습을 녹음, 녹화, 촬영하거나 이를 퍼트려서는 안 된다.

**제21조 【자치활동】**

- ① 학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, 학생회,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.
-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.
-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동아리는 원하는 학생들끼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들 수 있다.
- ⑤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와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,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'학생자치회 규정'으로 정한다.

**제22조 【시설 이용과 환경】**

- ① 특별실(컴퓨터실, 체육실, 도서관 등) 및 각종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고, 낙서를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.
- ② 사용한 후에는 항상 다음 사람을 위해 각종 교구를 제자리에 정리한다.

**제23조 【징계 사실의 알림 금지】**

- ① 학교는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학교 전체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.
- ② 학교는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교사에게 학생의 징계 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## 제24조 【학교 밖 생활】

- ① 윤담초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바른 말을 사용하고, 바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교통 규칙,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, 위험한 곳이나 학생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.
- ③ 학교 밖에서 자전거, 인라인 등을 탈 때, 가능하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타도록 한다.

##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

**제25조 【목적】**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6조 【적용근거】**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(학습자), 초·중등교육법 제8조(학교 규칙) 및 제18조(학생의 징계)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및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,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(징계)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.

**제27조 【선도원칙】**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-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.
-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.
-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제28조 【설치】**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.

**제29조 【기능】** 학생생활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
-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
-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

## 제30조 【구성】

-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.
-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,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, 지역사회 인사,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# 제31조 【임기】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

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32조 【운영】**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
**제33조 【회의소집】**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-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
-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
-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34조 【간사】**

-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.
-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,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.

**제35조 【운영세칙】**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36조 【징계의 종류】**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
- ① 학교 내의 봉사
- ② 사회봉사
- ③ 특별교육 이수
- ④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
**제37조 【선도의 방법】**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.

- ① 학교 내의 봉사
  - 1.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  - 2.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
- ② 사회봉사
  - 1.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  - 2.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(결과)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
  - 3.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.

③ 특별교육 이수

- 1.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,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.
- 2.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
  - 나.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(금연학교, 약물·마약·환각제·알콜 중독치료, 심리치료 및 상담 등) 이수
- 3.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수증 및 확인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

④ 출석정지

- 1.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.
- 2.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,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3.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.

**제38조 【선도의 기준】**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항	내 용	선도기준			
		학교 내의 봉사	사회 봉사	특별 교육 이수	출석 정지
1	미인정지각, 미인정조퇴를 합하여 5회 이상인 학생	○	○	○	○
2	미인정결석이 3일 이상인 학생	○	○	○	○
3	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	○	○	○	○
4	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	○	○	○	○
5	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, 탐독, 배포한 학생	○	○	○	○
6	교내·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	○	○	○	○
7	학교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이나 행위를 한 학생	○	○	○	○
8	교원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	○	○	○	○
9	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		○	○	○
10	도박을 한 학생		○	○	○
11	공문서를 위조한 학생(진단서, 성적표 등)		○	○	○
12	학교의 공공기물,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, 파손한 학생		○	○	○
13	휴가를 휴대한 학생		○	○	○
14	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		○	○	○
15	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, 흡입한 학생		○	○	○
16	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		○	○	○
17	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	○	○	○	○

**제39조 【학교장의 재심의 요구】**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40조 【재심의 신청】

-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,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.

#### 제41조 【재심의 절차】

- ① 학교장은 제40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
-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#### 제42조 【재심청구】

-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
#### 제43조 【사안설명】

-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, 해당 학년부장,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
-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, 개최 이유,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#### 제44조 【심의절차 및 조치】

-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1. 개회
  2. 심의과정 설명
  3. 담당부서·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·응답
  4. 담임·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·응답
  5. 학생 또는 보호자(법정대리인 선임 가능)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·응답
  6.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
-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·처리한다.

#### 제45조 【선도 내용의 통지】

-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, 재심청구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, 각 신청 및 청구 기간,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.
-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,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46조 【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】**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,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 단,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.

#### 제47조 【결과 처리·열람】

-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, 보관한다.
-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·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.

**제48조 【개정절차】**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「학교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 절차」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## 제4장 규정 제·개정 방법

**제49조 【목적】** 이 규정은 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(이하 '영'이라 한다)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'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'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50조 【적용범위】** '학교생활인권규정'을 제·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.

**제51조 【용어의 정의】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'학교생활인권규정'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'학생 포상, 징계,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,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,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,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'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.

### 제52조 【위원회 구성】

-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하여 「규정개정심의위원회」(이하 '위원회')를 둔다.
-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, 학생·보호자·교원·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, 학생의 수가 반드시 1/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,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,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.
-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·보호자·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.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, 단체 활동가, 대학 교수, 사회복지사, 청소년 지도사, 상담사,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·학부모·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, 일정,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.

### 제53조 【위원회 운영】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,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,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, 문헌조사를 실시하며, 학교관계자, 학부모 대표,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4조 【개정안 발의】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
-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
-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
- ③ 학부모 대표(학부모회 의결서 첨부)
- ④ 학생회 대표(학생회의 의결서 첨부)
- ⑤ 학교장

**제55조 【검토 및 의견수렴】**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(학급·학년회의, 학생대의원회 회의, 학부모회 회의, 교직원회의 등), 가정통신문, 스티커 붙이기,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.

### 제56조 【심의 및 결정】

-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-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

**제57조 【공포 및 정보 공시】**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.

**제58조 【연수 및 교육】**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, 학부모(보호자)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.

**제59조 【기타】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'위원회'의 협의로 결정한다.

[2023년 7월 17일 개정]

## 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.